

# 최 고 공 고 문
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1년 03월 05일까지 신고 바랍니다.  
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.

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담당자 : 추진옥

문의전화 : 033-430-4632

성명 생년월일	주소	지연 신고사항
김 *수 2000-01-02	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로	주민등록
지 *산 1920-10-15	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로	주민등록
이 *	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로	주민등록
1930-11-15		
이 *복 1932-08-06	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로	주민등록
이 *실 1937-04-03	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로	주민등록
정 *녀 1937-06-11	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로	주민등록
유 *순 1946-02-26	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로	주민등록
김 *이 1950-10-15	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로	주민등록
최 *옥 1952-10-05	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로	주민등록
고 *순 1955-01-01	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로	주민등록
김 *옥 1955-04-08	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로	주민등록
정 *숙 1958-12-28	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로	주민등록
안 *순 1968-06-10	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로	주민등록
최 *석 1969-12-15	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로	주민등록

## 최 고 공 고 문
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1년 03월 05일까지 신고 바랍니다.  
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.

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담당자 : 추진옥

문의전화 : 033-430-4632

이 *수 1971-10-08	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로	주민등록
한 *재 1975-10-26	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로	주민등록
김 *아 1976-10-13	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로	주민등록
김 *미 1979-05-28	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로	주민등록
김 *성 1993-07-21	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로	주민등록

※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등록, 정정,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(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제2항)  
제20조의2 및 제20조  
제40조제2항

2021년 02월 25일

두촌면장 인

